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2. 1. 7.(금) 조간 *인터넷 2022. 1. 6.(목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	과 장 이부용 사무관 정다비	044-202-7432 044-202-7436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

❖ 459개 사업장 점검 결과, 「채용서류 반환 고지」 및 「채용 일정 고지」 등 148건 법 위반사항 적발(79개소)

❖ 건설현장 채용 강요 관련 총 4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(2개 현장)

❖ 안경덕 장관, "신고 활성화와 수시 점검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추진" 과 함께 "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등 근절" 의지 드러내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2021년 하반기 **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**(이하, '채용절차법') **지도점검 등을 실시**('21.11.1.~'12.10., 6주)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□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"**채용 과정의 공정성**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,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**청년**과 **기업 모두**에게 **매우 중요**하다."라고 하면서,

○ "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**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,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.**"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, "**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**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"을 강조하면서

- 특히, "**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**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□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,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❶기업의 **자발적·종합적 개선**, ❷**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** 추진되었다.

❶ 우선 **기업의 자발적·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**

○ 2021년부터 **「신고 활성화 - 선(先) 사업장 자율개선 - 후(後) 현장점검」**의 **통합체계**를 운영하고 있으며,

* 집중신고기간('21.11.1.~26., 4주) → 자율개선(11.8.~19., 2주)→ 현장 지도점검(11.22.~12.10., 3주)

○ **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**하기 위해 과태료·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, 채용 일정·채용 여부 고지 등 **법상 권고사항**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**함께 점검**하였다.

❷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

○ 정부 합동 **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*」**('21.10.1.~12.31.)에 **적극 참여**하는 한편, 고용부 **신고 독려 - 집중점검 - 관련 부처 연계**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,

* 국무조정실 주관, 고용노동부(채용절차법 등 점검), 국토교통부(신고시스템 마련), 공정거래위(공정거래법 등 점검), 경찰청(형법상 위반사항 조치)

○ 또한, **채용압력 정황이 의심**되는 **71개의 건설현장**을 점검*하였고, **기존에 신고**되었던 **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**하였다.

* 애초 계획한 48개 건설업 사업장보다 23개를 적극적으로 점검 대상에 추가

□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, **148건**의 위반사항을 **적발**(79개소)해 **23건은 과태료**를 **부과**하고, **6건**은 **시정 요구**하는 한편, **119건은** 법 취지를 고려하여 **개선토록 안내**하였다.

○ **과태료 부과 사유**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(13건),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(8건),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(2건)이며,

○ **시정명령 사유**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(4건),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(2건)이었다.

○ 119건의 **권고사항 미준수 사례**는 채용 일정 미고지(28건), 채용 여부 미고지(19건) 등이었다.

□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, 관련자(신고인·피신고인·참고인)를 **집중 조사**하고 증거를 수집하여

○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**총 4건의 과태료**(총 6천만원) **부과 절차를 진행**하고,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**수사를 의뢰**하였다.

❖ **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**: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, 기존 自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·시위

→ 채용 협의 및 집회 결정 권한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'21.12.30.) 및 수사의뢰('21.12.30.)

❖ **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**: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,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·시위, 1개의 타워에 다수의 노동자 채용(기존 채용자는 대기, 자 조합원 추가채용)

→ 채용 협의 및 집회 결정 권한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'21.12.30.) 및 수사의뢰('21.12.30.)

○ 한편, **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**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**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**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사무관(☎044-202-7436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2021년 하반기 점검 결과 및 법률 주요 내용**

□ 2021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적발 내역

구분	위반사항		위반 건수
과태료	**소계**		**23**
	제4조제3항	근로조건 불리 변경	2
	제4조의3	개인정보 요구	8
	제11조제6항	채용서류 반환 고지	13
시정명령	**소계**		**6**
	제9조	심사비용 부담	2
	제11조제4항	채용서류 파기	4
권고규정	**소계**		**119**
	제5조	표준이력서	28
	제7조	전자방식 접수	24
	제8조	채용일정 고지	28
	제10조	채용여부 고지	19
	제13조	서류 제출 제한	20

※ 한 사업장에서 다수 위반한 경우가 있어, 적발 사업장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음

□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	제재수단
거짓채용광고 금지	▪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·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	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채용광고내용·근로조건 변경 금지	▪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없이 불리변경 금지	• 5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강요 등 금지	▪ 채용 관련 부당 청탁·압력·강요 및 금품 등 제공·수수 금지	• 3천만원 이하 과태료
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	▪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·수집 금지 ①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 ③직계존비속/형제자매 학력·직업·재산	• 5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심사비용	▪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	• 시정명령 •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
채용서류 반환 등	▪ 서류반환 요구시 반환 의무 및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▪ 서류 반환 비용 구인자 부담	• 시정명령 •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
	▪ 서류 반환 청구 대비, 보관 의무 ▪ 서류 반환, 폐기 등에 대한 규정 고지	• 3백만원 이하 과태료
표준이력서 권장	▪ 기초심사자료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) 표준양식 사용 권장	
전자방식 서류접수	▪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	
채용일정·채용여부 고지	▪ 채용일정, 심사지연사실,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여부 고지	
입증·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	▪ 서류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·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	